

소액수의(시설공사) 견적제출 안내공고

2026년 7월 14일

안양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동안구 관리자

1. 견적에 부치는 사항

가. 공 사 명 : 2026년 우기대비 배수경계석 빗물받이 정비사업

나. 위 치 : 안양시 동안구 일원

다. 공사개요 :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

※ 공사 관련 자료는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안구 건설과(☎031-8045-4537)에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

라.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60일간

마. 공사금액 (단위: 원)

추정금액	기초금액			관급자재	
	계	추정가격	부가가치세	도급자설치	관급자설치
99,346,000	87,560,000	79,600,000	7,960,000	11,786,000	-

사. 공사구분 : 전문공사 / 유지관리공사

※ 본 공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‘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’로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**업종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**

아.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

- 1)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(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)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9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,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,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, 「건설기술진흥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에 따르며
- 2)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**조정없이** 반영 하여야 합니다.

<<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(필독) >>

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(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의 합산금액)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.

(단위: 원)

합계 (A값)	국민연금 보험료	국민건강 보험료	노인장기 요양보험료	퇴직 공제부금비	산업안전 보건관리비	안전 관리비	품질 관리비
7,075,295	1,632,759	1,235,740	162,376	-	1,549,620	2,494,800	-

3)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」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.

※ 상용근로자(현장대리인 포함)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.

4)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노동부 고시)」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,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5)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,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 고시)」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.

6)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,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[별표6]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.

자.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

- 1)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 (제9장 계약 일반조건)에 따라 「**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**」 대상공사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 통장을 첨부한 『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』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2)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(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,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)의 노무비 청구내역(근로자 개인별 성명, 임금 및 연락처 등)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3)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(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) 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,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.
- 4) 계약상대자는 '2)'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의 노무비 지급내역(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)을 제출해야 합니다.

2. 현장설명

- 가. 현장설명은 생략하며,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.
- 나. 설계도서는 동안구청 **건설과 (☎031-8045-4537)**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

3. 견적제출 방법 : 총액입찰, 전자입찰, 적격심사 제외대상

4. 견적제출 참가자격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(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)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**아래 요건을 모두** 갖추어야 합니다.
- 나.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,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자
- 다.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가 **안양시**인 업체
- 라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**상·하수도설비공사업**을 등록한 업체로,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**시공 중(준공 시까지)** 유지할 수 있는 업체
- 마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'조세포탈 등을 한 자'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 - ※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 제2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
5. 입찰보증금

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.

6.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

- 가. **견적서 제출기간 : 2026. 7. 15.(수) 10:00 ~ 2026. 7. 21.(화) 10:00**
- 나. **개찰일시 및 장소 : 2026. 7. 21.(화) 11:00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 입찰집행관 PC**
 - ※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2026. 7. 21.(화) 16:00까지 다시 견적제출을 실시하며, 이와 관련한 계약상대자 결정은 2026. 7. 21.(화) 17:00에 실시합니다.

다.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

- 1)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.

※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(공동인증서 제외)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.

- 2)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,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- 3)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'공통 - 전자문서함관리 - 전자문서함목록 - 전자문서함 - 보낸문서 - 보낸입찰서보기'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※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(☎1588-0800)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라며,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7.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

- 가. 예정가격의 작성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에 따라 기초금액의 $\pm 3\%$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,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추천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천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.
- 나.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**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**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(이하 "국민연금보험료 등")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**89.745% 이상으로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**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」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[별표1]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.
- 다. 다만,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」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.
- 라. 낙찰 예정 선순위자가 무효의 견적 제출자이거나 결격자인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 계약 운영요령(행정안전부 예규)에 의하여 결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
8. 견적제출 무효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 중 제8장 입찰 유의서에 따릅니다.

9. 「하도급지킴이」(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) 이용에 관한 사항

- 가. 이 공사는 「하도급지킴이」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.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"「하도급지킴이」 이용 확약서"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만,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"「하도급지킴이」 이용 확약서"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
- ※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.

- 나. 낙찰을 받은 자는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(‘표준하도급계약서’ 기반)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. 다만, 하도급자(장비·자재업체 포함)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「하도급지킴이」에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다. 또한, 하도급 대금,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을 「하도급지킴이」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라. 「하도급지킴이」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“나라장터시스템-하도급 지킴이-시스템 사용안내(업체)”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0. 「건설기계 임대차 계약」 관련사항

- 가.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장비 대여금 체불방지를 위해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68조3에 따라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(표준계약서)를 반드시 작성(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포함)하여야 합니다.
- 나.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68조3에 따라 낙찰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**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**
다만,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.

- 원도급 :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, 공사금액이 5개월 이내(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)
- 하도급 : 하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, 공사시간이 3개월 이내(상동)
- 공 통 :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

- 다.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(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)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,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·건설업자·건설기계 대여업자가 **직불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**하여야 합니다.
- 라. 계약상대자(하수급인 포함)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**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**합니다.

※ 계약상대자 제출 의무사항

- 하도급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
- 기성 또는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업자 대금지급 내역 및 증빙서류
-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항을 하도급자에게 안내

11.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안내

- 가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나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·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《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12. 청렴계약이행 준수

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 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3.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사항

- 가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.
- 나. 낙찰자(계약상대자)는 「안양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」제10조에 따라,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「**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**」<붙임 1> 원본을 **계약체결 시 제출**해야 하며,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
14. 기 타

- 가.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문과 설계도서 및 시방서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)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」(행정안전부예규)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」(조달청고시)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」(조달청고시),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(조달청고시), 기타 입찰·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**입찰 공고문을 구성하는 모든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**
- 나.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, **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.**
- 다.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**입찰등록사항**과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및 사업자등록증(개인)상 **대표자**(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), **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**하시기 바랍니다.
- 라.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,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, 면세 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.
- 마. 낙찰자는 지역업체(안양시 업체 우선)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안양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(직불합의서 작성)
 - 2) 자재구매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
 - 3)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
- 바.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(E-9)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(H-2)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사.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**10일 이내**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(G2B)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- 아.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 제1조(납세의 의무)에 따라 **인지세를 납부**하여야 하며, 「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」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(부가가치세 제외)의 1.5%에 해당하는 **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**하여야 합니다.
- 자. 본 공사 추진 시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.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, 동 내용을 요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차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「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」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「**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**」<붙임 2>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카. 본 입찰과 관련한 입찰공고는 안양시 홈페이지(<http://anyang.go.kr>)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,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타.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“입찰정보-공사-기초금액”과 “개찰결과”에 게재됩니다.
- 파. 안양시 각종 불공정 행위,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(비위)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(감사실 ☎ 031-8045-2898)
 안양시 홈페이지 > 전자민원 > 신고센터 > 공직자부조리신고
- 하. 문의처
- ▶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: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(☎ 031-8045-4866)
 - ▶ 설계내역서, 시방서 등 사업내용: 안양시 동안구 건설과(☎ 031-8045-4537)
 - ▶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: 조달청 콜센터(☎ 1588-0800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]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1쪽)

발주자	발주기관	안양시	발주부서	발주날짜
	발주내용			[] 공사 [] 용역 [] 물품 [] 기타
	수의계약 사유			

계약상대자 (확인인)	성명	소속	[] 개인 [] 법인 [] 단체 [] 기타
	연락처	주소	

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		
①	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②	계약 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③	발주기관(산하기관)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④	발주기관(자회사)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⑤	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, 배우자, 국회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⑥	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⑦	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⑧	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(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해당하는가?	[] 예 [] 아니오 [] 해당없음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계약상대자(확인인) (서명 또는 인)

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

본인은 귀 기관의 _____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」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.

: 예 ()

: 아니오 ()

(업체명)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,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을 제출합니다.

. . .

주 소:

업 체 명:

대 표 자: (인)

안양시장 귀하